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「노인복지법」 제5조의2가 개정(2023. 8. 16. 개정, 2025. 8. 17. 시행)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등(제2조의2 제1항 ~ 4항)

- 1)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되(제1항),
- 2)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(제2항 및 제3항)
- 3)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, 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(제4항)

나. 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 통보 등(제2조의2 제5항 ~ 제7항)

- 1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결과, 필요시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(제5항),
- 2)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선 대책을 통보하도록 함(제6항)
- 3)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(제7항)

다. 노인정책영향평가 지원 등(제2조의2제8항)

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제8항)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노인정책영향평가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(이하 “영향평가”라 한다)를 해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영향평가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할 수 있다.

1.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

2.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

해당 정책이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, 정책 분석·평가의 시급성,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,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라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를 해당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고, 개선 대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결과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.

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노인정책영향평가) ①</u> <u>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</u> <u>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계획과</u> <u>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법</u> <u>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정</u> <u>책영향평가(이하 “영향평가”라</u> <u>한다)를 해야 한다.</u> <u>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</u> <u>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</u> <u>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향평</u> <u>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</u> <u>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</u> <u>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서를 보</u> <u>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</u> <u>다.</u> <u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관련</u> <u>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 <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</u> <u>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</u> <u>지부장관은 영향평가를 하기 전</u> <u>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</u> <u>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영향평</u> <u>가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을</u> <u>협의할 수 있다.</u>

1.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
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
장이 소관 노인 관련 정책에
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
우

2.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
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
하는 경우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
따라 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할
때에는 해당 정책이 노인 복지
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, 정
책 분석·평가의 시급성, 필요
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
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
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보건복
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
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,
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정
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
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라 정책 제언 또
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

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를 해당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고, 개선 대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결과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.

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 지원을 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56